

2020년도 제35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자 : 2020. 12. 15.(화요일)
- 방 법 : 온라인심의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 신창환 위원(분과위원장),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II. 회의내용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92건(안건번호 제2020-166181호~166230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Ⅲ. 주요내용

- A 위원: 금번 심의안건인 방송 예능프로그램 '로또싱어', '대한민국 팔도명물 인증쇼-나야나', 영화 '테넷', '콜' 등 총 92건은 불법복제하여 인터넷에 게시한 것으로써, 저작권법 제 103조의 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B 위원: 안건번호 제2020-166181호~166230호{'도도파일' 사이트의 '(방송)로또 싱어(2020)' 등 92건의 게시물}는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영화, 방송)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이번 회 심의 대상 안건은 모두 불법 복제물을 웹하드 등 웹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서 저작권법 제133조의 3 소정의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D 위원: 안건번호 제2020-166181호~166230호{'도도파일' 사이트의 '(방송)로또 싱어(2020)' 등 92건의 게시물}는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영화, 방송)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2020년 제359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2. 18.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